

의안번호	2200610
의 회 인	소병훈의원
회 답 일	2024. 7. 4.
추계번호	24C104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의5(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금지 등)	○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가 상담, 치료, 수사기관 조사 등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해당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음 ○ 국가는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비용의 지원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조의5(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금지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유급휴가 비용 지원(안 제4조의5)

- 개정안에 따라 사용자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근로기준법」 상 연차 유급휴가 외에 추가적인 유급휴가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 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됨

-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¹⁾는 사용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근로 연수에 따라 유급휴가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유급휴가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가정폭력 피해자의 추가적인 유급휴가 사용 현황과 국가의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기준 및 규모 등에 관한 정보를 현 시점에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가정폭력 피해자의 추가 유급휴가 신청 현황 및 신청자의 임금 정보 등을 예측하기 어려움
 - 또한, 개정안은 국가의 유급휴가 비용 지원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급휴가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비용 지원 규모 등에 관한 정보를 알기 어려움

Ⅲ. 부대의견

□ 없음

-
- 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③ 삭제
-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우병혁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우병혁	02-6788-3739	wbhcd@assembly.go.kr